

중국 개인소득세법상 무주소 개인에 대한 과세

2024. 6

※ 본 자료는 중국의 거주자 개념 및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의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자료로써, 구체적인 사안별 세법 적용 및 과세여부 등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• • 목 차 • •

I.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및 판정기준 1

1. 거주자 기본개념

1.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및 기준

2.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징수관리

II. 한-중 조세조약을 감안한 경우 분석 8

I

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및 판정기준

1. 거주자 기본개념

□ 거주자의 의의

- (개념) 세법상 거주자(Resident)란 국적(내국인과 외국인)과는 다른 개념으로, 각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정하고 납세자에 대한 이중과세(double taxation) 또는 이중비과세(double non-taxation)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
 - (국내법적 측면) 각 국은 자국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(무제한 납세의무)에 과세하며,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소득발생 원천지국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(제한 납세의무)
 - (조세조약 측면) 다만, 양국 각 세법에서 거주자로 판정(이중거주자)되거나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의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양국간 과세권 범위를 배분
 -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는 '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(domicile), 거주지(residence), 관리장소(place of management)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(人)'으로 규정
 - 또한, 모델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판정기준*(Tie-breaker Rule)을 제시
- *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 : ① 항구적 주거 →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→ ③ 일상적 거소 → ④ 국민 → ⑤ 양국간 상호합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·판정
- (국내세법과 조약간 관계)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, 특별 법적 지위로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나, 조세조약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법·절차 등은 통상 국내세법 적용

< (참고) 한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>

- ▶ (정의) 한국 국내세법에서는 거주자를 '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'으로 정의하면서, 거주자의 판정기준으로 주소*와 상당기간 거주하는 거소의 개념을 사용

*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가족·직업·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

2.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 및 기준

□ 중국 세법상 거주자 개념

○ (정의) 중국 개인소득세법(제1조)에서는 거주자(거민개인)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

- ①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②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나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183일* 거주한 개인

* '19년 개인소득세법 개정 시, 거주자로 보는 경내 누적 거주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국제적인 통용기준인 183일로 변경 실시

※ (거주기간 계산) 중국 세무당국은 <중국 경내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 표준에 대한 공고>(2019년 제34호) 발표

⇒ 주소가 없는 개인(무주소 개인)의 중국 경내 거주일수는 체류일에 따라 계산하며, 24시간 미만 체류한 날은 체류일에 불포함

- 또한,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'호적, 가정, 경제적 이익 관계'로 인해 중국 경내에 '습관적으로 거주'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(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)

- 논리적인 귀결로, 비거주자(비거민개인)는 ①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②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1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

○ (과세범위) 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전세계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, 비거주자는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(China-Sourced Income)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

- 중국 원천소득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(제3조)에서 규정한 5가지 소득으로, 소득 지급지역이 경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 원천소득으로 봄

▶ ① 임직·고용·계약 등으로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②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③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④ 중국 경내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⑤ 중국 경내의 기업, 거주자 개인 등에게서 취득하는 이자, 배당소득

□ 무주소 개인에 대한 검토

- (무주소 개인 개념) 거주자 판단 관련 중국 경내 주소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, 경내에 주소가 없는 '무주소 개인'의 경우에는 거주일수(183일 이상)에 따라 '무주소 거주자 개인'과 '비거주자'로 구분
 - 중국 현지 진출기업의 주재원은 통상 호적·가정·경제적 이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, 대부분의 경우 183일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'무주소 거주자 개인'으로 분류됨.
- (과세범위) 무주소 거주자 개인의 경우 '중국 경내 1년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해서 만 6년이 되지 않는 경우'에는 중국 경외 원천이 있고 동시에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**개인소득세를 면제**(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조)
 - 만 6년이 되는 해부터 중국 경내 및 경외의 모든 전세계 소득에 과세

< 연속해서 만 6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>

- ① 과거 6년 중 임의의 1년 내 경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
- ② 과거 6년 중 누계 만 183일 이상 거주한 임의의 1년 내 한 번에 3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

- 비거주자의 경우,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 누계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원천이 있는 소득 중 경외 고용주가 지급*하는 부분은 **개인소득세를 면제**(실시조례 제5조)

* 이 경우, 경외 고용주가 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고용주의 중국 경내 기구·장소(예 : 지점 등)에서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

< (총괄) 중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>

구 분		거주기간	중국 경내 원천소득		중국 경외 원천소득	
		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
중국내 주소 ○			과세	과세	과세	과세
중국내 주소 ×	비거주자	1~90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		91~182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	무주소 주민 개인	183일~6년	과세	과세	과세	비과세
		6년 이상	과세	과세	과세	과세

□ 무주소 개인의 급여소득 계산

- (기본방향) 무주소 개인은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에 고용된 경우로, ① 거주기간*(90일, 183일, 6년) ② 고급관리인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급여소득 범위 및 계산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음.

*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과세범위(P.4 표)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을 계산하는 방식

- (근거규정)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 '19.3월 시행한 <비거주자 및 무주소 주민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>에 세부적인 계산방식 등을 규정

- (주요개념) 고급관리인원이라 함은, 이사·감사 및 고위관리직무 담당 개인을 말하며, 경내 근무일수*는 중국 내 실제 근무일에 근무기간 중 경내·외에서 보낸 공휴일·개인휴가·교육훈련 일수를 포함한 개념

* 경내와 경외에서 동시에 임직하거나 경외에서만 임직하는 개인이, 중국 경내 체류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경내 근무일수를 0.5일로 계산

< 가. 고급관리인원이 아닐 경우 >

- ① 경내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- (계산방식) 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무주소 개인(비거주자)은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경내 고용주가 지급·부담한 급여소득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납부(공식 ①)

* 경내 고용주는 경내의 기업과 개인과 함께, 경외 기업 또는 개인의 경내 기구·장소(예 : 지점 등)를 포함하는 개념

$$\text{▶ 급여수입액} =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 \times (\text{당월 경내 지급 급여금액} /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) \times (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경내 근무 일수} / 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양력일수})$$

- ② 경내 거주기간이 90일 초과 183일 미만인 경우

- (계산방식) 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 초과 183일 미만인 무주소 개인(비거주자)은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급여소득에 한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(공식 ②)

$$\blacktriangleright \text{급여수입액} =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 \times (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경내 근무일수} / 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양력일수})$$

- ③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경우
- (계산방식)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하여 6년 미만인 무주소 주민개인은 **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한 급여소득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(공식 ③)**

$$\blacktriangleright \text{급여수입액} =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 \times [1 - (\text{당월 경외 지급 급여금액} /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) \times (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경외 근무일수} / \text{당월 급여 귀속 근무기간의 양력일수})]$$

- ④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인 경우
- (계산방식)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하여 6년이 된 무주소 주민개인은 **경내외 취득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(공식 ④)**

$$\blacktriangleright \text{급여수입액} = \text{당월 경내외 급여총액}$$

< 나. 고급관리인원일 경우 >

※ 무주소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일 경우,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방식(③, ④)대로 적용하나, 183일 미만 거주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

- ① 경내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- (계산방식) 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무주소 개인(비거주자) 고급관리인원은 **경내 고용주가 지급·부담하는 급여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(공식 ⑤)**

$$\blacktriangleright \text{급여수입액} = \text{당월 경내 지급 급여총액}$$

- ② 경내 거주기간이 90일 초과 183일 미만인 경우
- (계산방식) 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 초과 183일 미만인 무주소 개인(비거주자) 고급관리인원은 **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지급한 급여소득을 제외하고 납부(위 공식 ③)**

< (총괄) 무주소 개인의 급여소득 계산방식 >

거주기간	중국 경내 원천소득		중국 경외 원천소득		계산방식
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	
< 가. 고급관리인원이 아닐 경우 >					
1~90일	○	×	×	×	공식 ①
91~182일	○	○	×	×	공식 ②
183일~6년	○	○	○	×	공식 ③
6년 이상	○	○	○	○	공식 ④
< 나. 고급관리인원일 경우 >					
1~90일	○	×	○	×	공식 ⑤
91~182일	○	○	○	×	공식 ③
183일~6년	○	○	○	×	공식 ③
6년 이상	○	○	○	○	공식 ④

3.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징수관리

□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과세방식

- (기본방향) 중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및 징수 관리 방식 차이는 기본적으로 **종합소득* 확정신고**의 유무임.
 - * 개인소득세법상 열거된 9개 과세소득 중 임금소득, 노무보수 소득, 원고료 소득, 특허권사용료 소득 등 4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분류
 - 모든 소득에 대해 **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회 원천징수 납부**하며,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시에는 소득을 취득한 납세자(거주자 및 비거주자)가 **다음달 15일까지 신고·납부**하는 것은 공통 적용사항
 - *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공제·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6월말까지 신고·납부
- (종합소득) 거주자에 대한 **종합소득**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원천징수 납부하며, 다음해 3~6월까지 확정신고 실시
 - * 거주자가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도 다음해 3~6월 확정신고를 실시해야 함.
 -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원천징수 납부하되, 별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실시하지 않음.

- (그 외 소득) 경영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매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납신고·납부하고, 다음해 3월말까지 확정신고를 실시
 - 그 외의 이자 배당소득, 재산양도소득, 재산임대소득 및 우발소득 등 4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매회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며,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 실시

□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식

- (원천징수납부) 원천징수방법 및 세액은 각 과세소득별,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.

- 임금소득의 경우 거주자는 '누적 원천징수법'*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, 비거주자는 '매월 단위로 총급여에서 기본공제(월 5천 위안)를 공제한 후 월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

* 누적 원천징수법이란, 매월 수입을 누적인 소득에서 누적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후 기납부한 누적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방법

※ (예) 월 임금소득이 5만 위안인 거주자 A와 비거주자 B의 원천징수 계산법 (개념을 간편하게 이해하기 위해 거주자의 공제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)

- ▶ B는 매월 $(50,000 - 5,000) \times$ 월별 원천징수세율로 동일하게 징수
- ▶ A는 첫 번째 달은 '50,000 × 누적 원천징수세율'로 계산하고, N 번째 달은 '(50,000 × N) × 누적 원천징수세율 - 기납부 누적 원천세액'으로 계산

- 노무보수 소득, 원고료 소득,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총수입에서 규정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공제한 과세 소득액에서 원천징수세율*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

* 다만, 원천징수세율이 ① 거주자인 경우 i) 노무보수 소득은 20%, 30%, 40%의 초과 누진세율 ii) 원고료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20% 단일세율 ② 비거주자인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세율(3%~45% 누진세율)이 적용되는 점이 차이

- 그 외의 소득은 20%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, 소득발생 매회 또는 매월 20%로 원천징수·납부 실시

- (종합소득납부) 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3~6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실시하고, 비거주자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님.

* 거주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세액(환급 또는 추가납부)

= [(종합소득 수입액 - 6만원 - 특정항목공제(3보험 1공적금) - 특정항목부가공제 (의료비·교육비 등) - 기타 공제 - 기부금) × 적용세율 - 속산공제액 - 기납부세액

II

한-중 조세조약을 감안할 경우 분석

□ 한-중 조세조약 상 거주자 판단기준

- (기본원칙) 한-중 조세조약은 중국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, 양국간 과세권 배분 및 소득구분 등과 관련하여 우선 적용
 -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개인에 대한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음
 - 소득 유형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고, 이중과세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
- (판단기준) 개인의 거주지는 ①항구적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,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②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(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) 국가로 함
 - 상기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③일상적 거소, ④개인이 국민으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고 어느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양국의 ⑤상호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
- (재정부·세무총국 공고) 중국 과세당국은 비거주자 개인 및 무주소 거주자 개인에 관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(재세2019년 제 35호) 제4조에서 무주소 개인에 대한 조세협정 적용을 규정
 - 무주소 개인이 조세조약상 상대방 국가의 조세상 거주자 개인인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

□ 한-중 조세조약 적용 시 과세권 배분

- (비거주자) 중국 세법상 경내에서 90일 초과 183일 미만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던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든지 상관없이 중국 경내 원천소득은 모두 과세
 - 그러나, 한-중 조세조약 상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에는 중국 경내 원천소득이라도 경외 고용주가 지급할 때에는 비과세가 되도록 규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

- * (예) 한국 모회사인 A의 직원 K씨가 중국 경내 자회사인 B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 출장와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,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한국 모회사 A에서 지급하는 임금소득은 비과세됨.

< 한-중 조세조약 적용 시 과세범위 조정 >

구 분		거주기간	중국 경내 원천소득		중국 경외 원천소득	
		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	경내고용주 지급	경외고용주 지급
중국 세법	비거주자	1~90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		91~182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	비과세	비과세
↓						
한중 조세 조약	비거주자	1~90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		91~182일	경내 근무기간 소득만 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
- 위의 거주기간 183일 미만일 경우 경외고용주 지급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'지급소득이 중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만족 필요(한-중 조세조약 제15조 '종속적 인적용역')

※ (사례) 한국 모기업 C에서는 중국 자회사 D와 10개의 독립적인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, 183일 미만 거주하는 여러 명의 직원을 교대로 파견하여 용역을 수행
 ⇒ 한국 모기업 C는 각 직원들의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고, 경외 고용주인 C가 지급하는 소득이라 판단하여 개인소득세 신고·납부를 하지 않았음.
 ⇒ 그러나 중국 세무당국은 동 프로젝트는 유사한 성격의 관련 프로젝트로 보고, 중국 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개인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

○ (무주소 거주자) 중국 소득세법상 무주소 거주자(6년 거주 포함)가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 개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음

- 소득 발생시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되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음

※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중국에서 이자소득이 100이 발생한 경우 중국은 원천지국으로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짐.
 ⇒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0%이지만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0%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10을 과세
 ⇒ 한국은 해당 개인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므로 중국에서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(또는 분리과세)하고, 중국에서 납부한 10에 대해서는 납부대상세액에서 공제함.

< 한-중 조세조약의 소득구분에 따른 규정(요약) >

조항	소득구분	내용
제6조	부동산 소득	제1항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제10조	배당	제1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제2항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
제11조	이자	제1항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제2항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
제12조	사용료	제1항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제2항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
제13조	양도소득	제1항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제14조	독립적 인적용역	제1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.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(고정시설 귀속 부분 한정) 나. 183일 초과하여 체재(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 한정)
제15조	종속적 인적용역	제1항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,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,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타방체약국안에서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가. 183일 미만 체재 나.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 다. 보수가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
제22조	기타소득	제1항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